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1년 01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라보셀(주)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2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
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이태화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